문서번호	교육청소년과-2806
결재일자	2015.2.6.
공개여부	부분공개

주무관	0 52.55		经模型	부구청장	구청장
전보현	황지연	최병재	모일환	김병환	02/06 김 영배
협 조	정	무보좌관	윤정) 비	

아동영향평가 등 실시 계획

2015. 1.

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

- 아동친화도시 정착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-

아동영향평가 등 실시 계획

성북구에서 추진하는 정책 ·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보장 등 아동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

I │ 추진개요

□ 추진근거

○ 아동영향평가 시행은 2015년 7대 전략과제인 "아동친화 교육도시 정착"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2014년 5월 29일 제정된 "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"에 근거하여 추진

-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및 성북구가 한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
- 2015년 성북구 예산 중 아동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24.7%로 비중이 높아 아동 관련 사업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, 효과 등 의 검토 필요

□ 아동영향평가 대상

- O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·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O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
- 해당 연도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

□ 주요평가내용

-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조례·규칙,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영향평가 실시
- O 사안이 중대하여 전문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자문, 청소년 구정참여단 등 참

여기구의 의견을 받음

□ 추진경과

- O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실시
 - 시행기간 : 2013. 10. 21 ~ 2014. 2. 10
 - 수행기과 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과학 연구소
 - 용역내용
 - ㆍ 해외 영향평가 사례 연구
 - · 아동영향평가 접근법, 기준과 대상, 점검표 등 방법제시
 - · 어린이·청소년 모니터링 참여방안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
 - 입법예고 : 2014. 4. 1 ~ 4. 21
 -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 : 2014. 4. 23
 - 성북구의회 심의·의결: 2014. 5. 1 ~ 5. 9
 - 조례공포 : 2014. 5. 29
 - O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구성: 2014.11.17.

Ⅱ │ 추진방향

"성북구" 아동친화도시 정착과 아동권리 증진

추진 방향

- ① 행정체계 내 이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
- ② 성북구 이동정책의 효과성 제고
- ③ 아동의 사회적 참여기반 확대

실행 내용

행정체계 내

- 아동영향평가 실시
- 아동권리 교육및 홍보

민관 상호협력을 통한 효과성 제고

-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성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하여 상호 협력

아동의 참여 확대

- 청소년 구정참여단의 활동
- 어린이·청소년의회 운영
- 청소년참여 정책 창안 대회 운영 등

세부 추진계획

1. 아동영향평가의 점진적 시행

□ 사업개요

III

- 법령, 계획, 사업 등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, 완료단계까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차별적 분배를 파악하여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정책 등이 되도록 함
 - ※ 영향평가에서 고려하는 아동의 연령은 아동복지법,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 ~ 18세 미만까지로 봄

□ 현황

-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대상(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8조)
 - 조례 및 규칙 제·개정 현황

(기간: 2010. 7 ~ 2014. 12)

구 분	조	례	규칙			
총계	제정 개정		제정	개정		
262	75 119		18	50		
41	아동 관련	조례 : 38	아동 관련	규칙 : 3		

※ 동일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중복된 숫자임

O 2015년도 아동친화예산 현황

구분	참여부서/세부사업 수	예산액 (단위: 백만원)	전년도대비 예산증감율	영향평가 중점사업 수		
생존권	7개부서/ 25개 사업	15,793	증10.07%	8개 사업		
보호권	9개부서/ 28개 사업	3,464	증9.07%	7개 사업		
발달권	7개부서/ 55개 사업	98,797	증0.97%	23개 사업		
참여권	4개부서/ 5개 사업	147	증0.4%	4개 사업		
계	16개 부서/ 113개 사업	118,203	증1.6%	42개 사업		

※ 2014년도 아동친화예산 대상사업 106개 / 예산액 116,425백만원

□ 실시방법

① 조례 및 규칙의 제·개정

- 주요내용
- 아동과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·개정 시 조문 내용이 아 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검토
- 대 상 : 조례 및 규칙의 내용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
- 실시시기 : 입법예고 기간(조례규칙 심의회 전 완료)
- 시행방법
 - ① 담당부서에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(붙임2)를 조례 또는 규칙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가진단 실시
 - ②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
- 기타사항 : 현행 성북구의 제정된 조례·규칙 중 38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, 관련이 있어 개정 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이 됨
 - ※ 기 제정된 아동영향평가 대상 조례의 경우 붙임4 참조

② 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

- 주요내용
-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부사업의 내용, 예산의 분배 등에 대해 검토
- 대 상 : 2015.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42개 사업
- 실시시기 : 2015년도 예산 집행 전 사전 실시
- 시행방법
 - ① 담당부서에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자가 진단 실시
 - ②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
 - ③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2015. 아동친화예산 자료 제출

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

- 주요내용
-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'법률,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'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
- 대 상 : 현황의 '중장기 계획' 중 아동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선별, 평가실시
- 실시시기 : 중장기 계획 확정 전
- 시행방법
- ① 법령 등에 의해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(수립시기 등)
- ② 수립시기 도래 전 담당부서의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에 의거하여 자가진단 실시
- ③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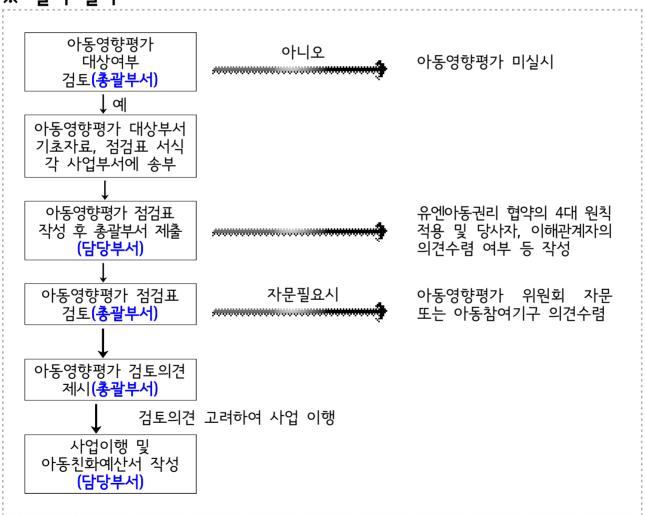
4 사전 아동영향평가

- 주요내용
-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조례· 규칙,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영향평가 사전실시 함
 - · 사안이 중대하여 전문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자문, 어린이·청소년의회 등 아 동참여기구의 의견을 받음
- 대 상 : 조례 및 규칙, 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, 중장기 계획
- 실시시기
 - · 조례 및 규칙 : 조례·규칙 심의회 전
 - 중장기 계획 및 세출예산 사업 : 대상의 계획 확정 전
- 시행방법
 - ① 담당부서의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에 의거하여 자가진단 실시
 - ②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
 - ③ 평가 대상 세출예산 사업, 중장기 계획의 경우 시행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거나 사전평가만으로 아동에게 미 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후영향평가 실시

5 사후 아동영향평가

- 주요내용
 -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사업 중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아동영향 평가 총괄부서에서 검토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
 - 실시시기 : 세출예산 단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
 - 시햇방법
 - ① 계획 등의 확정 전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와 사업실적, 시행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
 - ②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 권고 등의 의견 제시

※ 실시 절차



□ 아동영향평가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중점과제

시기	2015년 (도입기)	2016년 (발전기)	2017년 (안정기)
사업 추진 일정	· 사전이동영향평가의 안정화 · 사후아동영향평가 시범적용	· 사후아동영항평가 안정화	· 이동영향평가체계 안정화
중점 과제	· 아동영향평가 기본계획서 작성 · 성북구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아동영향평가 심의, 자문 · 아동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	· 아동권리지킴이 활동 전개 ·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모델 체계적 정리	·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모델 보급

□ 추진일정

구 분(2015년)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조례·규칙												
제정, 개정	계획	계획수립 아동영향평가 시행(제·개정 조례, 규칙 상시 사전 아동					동영향평	! 가)				
세출예산												
세물에선 단위(세부)사업	계획	수립	아 동 영 시행(향평가 사전)							아 동 영 시행(향평가 사후)
아동친화예산서												
작중선화에산시 작성			예산 작									
중장기 사업계획												
	계획	수립	중경 사업 현황	-	0	가동영형	·평가 시	행(중 정	당기 계약	획수립	확정 전	!)

2. 아동권리 인식 확산

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

□ 아동권리 주민교육

- 주요내용
 - 아동의 권리에 대한 주민,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등의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연 1회 실시
 - 4~5회의 아동권리 교육과정 또는 주민특강 방식으로 구성하여 아동권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강사 섭외 (예시) 주민인권학교, 협동조합 마을학교

O 기대효과

- 아동인권,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, 소양을 넓 힘으로써 향후 아동권리 지킴이로서 활동가 양성 기대

□ 아동참여기구 아동권리 교육

- 주요내용
 - 2015. 성북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및 청소년구정참여단 구성 후 아동대상으로 연1회 아동권리 교육

O 기대효과

-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의 권리 존중과 증진, 그리고 다양한 의회, 모니터링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② 아동 권리에 대한 내부이해 증진

□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

- O 주요내용
 - 아동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아동영향평가, 아동친화 예산서 등 아동친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연1회 아동권리 교육 실시
 - 유엔아동권리협약,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등 강의식 교육진행
- 시행방법 : 전 직원 집합교육

□ 아동친화예산서 제작

- 주요내용
 - 2015. 아동영향평가 대상인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예산규모, 수혜자, 사업내용, 연도별 예산 변동 추이 등의 내용과 함께 아동관련 사업 예산의 사용, 배분 현황 등을 파악
 -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아동친화 사업 의 분류, 아동권리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
- 시행시기 : 2015. 3 ~ 4
 - 세출예산 세부사업 아동영향평가 후 아동친화예산서 작성
- O 발간부수: 100부

3. 민·관 협력체계 운영

①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운영

- □ 운영시기 : 정기회 연1회(필요시 임시회 개최)
- □ 운영내용
 - O 2015년 조례, 규칙 제·개정, 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 등에 대한 사전 아동영향평가 결과 및 사후 아동영향평가 결과 심의·자문
 - O 2016년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 심의·자문

②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

- □ 추진목적
 -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,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동, 주민, 전문가 등이 모니터링 참여

□ 아동권리 지킴이 구성

- 모니터링 필요 사업의 시행 시(아동 관련 문화행사, 아동·청소년 관련 시설 등) 아동권리 지킴이(성인, 전문가, 어린이·청소년 등) 구성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
- 국제아동인권센터,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아동권리 옹호기관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교육 시행

◈ 2014년 운영실적 ◈

- 2014. 어린이의회 내 위원회를 5개 구성(교육, 문화, 복지, 인권, 특별)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
-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 진행

7 0101	성	별	구 분		
총 인원	남	여	5학년	6학년	
31	21	10	6	25	

- 구성 및 운영기간 : 2014. 3. 25 ~ 12. 31
- 운영내용
 - · 어린이의회 오리엔테이션: 2014. 6. 27
 - · 어린이의회 발대식 : 2014. 7. 21
 - · 모니터링 관련 어린이의회 위원 교육(2회) : 2014. 8. 11 ~ 12
 - · 2015.학생참여 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열린토론회 참여 : 2014. 9. 3
 - ⇒ 어린이의회 의원 토론회 관련 정책제안 13개

Ⅳ│행정사항

- □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자가진단 실시 : 해당 사업부서
 - O '2015. 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' 중 42개 단위사업을 아동영향 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
 - <u>42개 단위사업 시행부서</u>(붙임 4)는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점검표, 아동영향평가 시행 관련 사업부서 의견서(붙임 1) 제출
 - O 추진기간
 - 사업부서 아동영향평가 실시: ~ 2014. 2. 13(금)
 - 평가결과 주관부서 검토: ~ 2015. 2. 23(월)
- □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: 해당 사업부서
 - O '2015. 세출예산 단위(세부)사업' 중 113개 단위사업을 아동친 화예산서 대상사업으로 선정
 - <u>113개 단위사업 시행부서</u>(붙임 5)는 아동친화예산서 작성예시 를 참고하여 아동친화예산서(붙임 6) 제출
 - 추진기간
 - 사업부서 예산서 작성: ~ 2015. 2. 13(금)
 - 주관부서(교육청소년과) 예산서 수합 및 발간 : 2015. 3 ~ 4
- □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및 아동친화예산서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: 교육청소년과
- 붙임 1. 아동영항평가 대상 사업목록 1부.
 - 2. 아동친화예산서 대상 사업목록 1부.
 - 3. 아동영향평가 대상 조례 및 규칙 목록 1부
 - 4. 아동영향평가 사전·사후 점검표 서식(담당부서용) 1부
 - 5. 아동영향평가 사전·사후 점검표 서식(총괄부서용) 1부
 - 6. 아동친화예산서 작성서식(예) 1부. 끝.